

접수일	접수자	번호사
R/1	M	

서울고등법원

제 21 민 사 부

판 결

사 전 2002나659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석연, 김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이건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0-10

2. 김광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15 잠원중앙하이츠 에이동 1101호

3. 이윤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8 삼호가든맨션 2동 602호

4. 이해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3-7 개나리아파트 30동 703호

5. 송용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3동 702호

6. 윤종용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0-9 삼성빌라 101호

7. 박희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0-11 현대빌라 에이동 7호

8. 문병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2 삼성보라매 옴니타워 2204호

9. 진대제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

10. 최도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35 서초주택단지 19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서정우, 김택수, 이완식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 백윤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변 론 종 결 2003. 7. 24.

판 결 선 고 2003. 11. 20.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의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피고 이진희는 70억원,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120억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3.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윤우,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부분(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의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피고 이진희는 3,459억원, 위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1,904억원, 피고 김광호, 이윤우, 윤종용,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1,480억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한편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감축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원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소의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1) 피고 이견회는,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과 연대하여 96,721,810,905원,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과 연대하여 626억 6,0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691억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이 원심에서 ① 피고 이견회의 뇌물공여를 원인으로 한, ② 주식회사 중앙일보와의 내부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한, ③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의 내부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한, ④ 이천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행위를 원인으로 한, ⑤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 및 매도행위를 원인으로 한 각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원심 법원은 ②, ③ 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고, ①, ④, ⑤ 청구 부분을 인용 또는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에 원고들은 일부 인용된 ④, ⑤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인용 또는 일부 인용된 ①, ④, ⑤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위 ①, ④, ⑤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 이견회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2의 가.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피고 이견회가 뇌물로 공여할 자금을 삼성전자로부터 각출한 후 이를 노태우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399조 소정의 법령에 위반된 행위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위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75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삼성전자에게 위 7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이견회는, 자신이 위와 같이 삼성전자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받아 이를 당시 대통령이던 위 노태우에게 공여한 행위는, 삼성그룹이 각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상 허용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회계처리를 거쳐 지출한 행위임과 아울러 삼성그룹 전체의 이익과 그 존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인 한편, 당시 대통령인 노태우가 대부분의 대기업에 대하여 금품

을 요구하고 그들이 뇌물을 공여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자신 또한 이를 회피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게 행위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피고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삼성전자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으므로 상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피고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해제는 재무제표에 기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위 피고가 삼성전자로부터 조성된 75억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뇌물공여행위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의 위 뇌물공여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사의 책임이 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또 위 피고는, 삼성전자가 자기를 위하여 뇌물을 제공한 이사와 더불어 책임을 져야 할 본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견회를 상대로 뇌물 가액의 손해배상을 구함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삼성전자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이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본인인 삼성전

자의 책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한편 위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체가 당시 대통령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입지 않는 등 반사적 이익을 누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업경영은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만 하고, 이사는 회사경영의 주체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바, 위 피고가 대통령을 상대로 형법상의 범죄행위인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기업경영의 수단으로서 허용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이 1998. 10. 20.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는 위 피고가 1998. 3.경 노태우에게 삼성전자의 자금 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1998. 3.경 뇌물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이견회는 삼성전자에게 70억원(1988. 12.경부터 1992. 8.경까지의 뇌물 공여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천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행위 등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16, 갑제16호증의 1 내지 4, 갑제26호증의 1 내지 9, 갑제27, 28호증의 각 1 내지 6, 갑제29호증의 1 내지 5, 갑제34호증의 1, 2, 3, 갑제36호증의 4, 갑제40, 42, 43호증, 갑제60호증의 1, 2, 을제5, 6, 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14호증, 을제18 내지 21호증, 을제25, 2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장창덕의 증언, 당심의 피고 윤종용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원심의 주식회사 한빛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천전기공업 주식회사(1997. 8. 27. 이천전기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천전기라고만 한다)는 1956. 2. 17. 설립되었고, 국내 최초로 전동기, 전압기, 전기변환장치 등 중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비상장회사로서 1964. 10.경 일본의 대표적인 중전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도시바와 기술제휴 및 자본합작을 통하여 1960년대 내지 1970년대에 중전기기 업계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 이후 대기업의 사업참여로 인하여 대략 1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

(2) 이천전기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997. 4. 3. 전까지 500만주, 그 이후 1998. 8. 1.까지 1,000만주, 그 후 5,000만주로 변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1997. 4. 3. 전까지 보통주 137만 4,879주(자본금 68억 7,439만 5천원), 1997. 4. 3. 현재 537만 4,869주(자본금 268억 7,439만 5천원), 1998. 7. 28. 현재 931만 4,879주(자본금 465억 7,439만 5천원), 1998. 8. 12. 현재 2,213만 4,879주(자본금 1,106억 7,439만 5천원), 1998. 8. 26. 현재 3,013만 4,879주(자본금 1,508억 7,439만 5천원), 1998. 9. 5. 현재 3,955만 4,879주(자본금 1,977억 7,439만 5천원)이다.

(3) 이천전기와 거래관계가 있던 삼성전관 주식회사는 1993. 5. 23. 이천전기의 주식 523,795주를 매입하였는데, 이로써 그 당시의 주식비율은 이천전기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의 장세창이 42.45%(583,630주), 삼성전관 주식회사가 38.09%(523,795주), 주식회사 도시바가 16.91%(232,500주), 기타 2.55%(34,954주)로 되었다.

(4) 삼성전자는 1996. 4.경 기획팀으로 하여금 중전기 사업(이하 중전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해외 전자업체(GE, 지멘스, ABB, 도시바, 히타치)의 중전사업 부문 비중(매출액 기준)이 적게는 17.6%에서 많게는 50% 상당이었음에 반하여 삼성전자는 0.3%에 불과하였고, 국내 경쟁기업인 LG의 경우 14%에 이르고 있어, 기획팀은 삼성전자가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전자 부분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전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시스템화한 종합 전자 사업구조로 변화되어야 하고, 국내 경쟁기업인 LG, 현대와의 경쟁에서 본질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중전사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중전사업의 참여방안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은 전문인력, 특허 및 기술의 확보, 판매망 구축, 판납 허가 등의 어려움과 공장의 신설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업체 중 이천전기의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5) 삼성전자의 재무팀은 1997. 2.경 이천전기의 사업현황과 재무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이천전기가 비록 당시로서는 과도한 설비투자와 매출부진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였지만 유상증자 및 단기악성자금의 장기저리자금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료비, 노무비 등의 원가구조를 개선하며 제품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1997년까지 당기손실을 축소하고, 1998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면 2000년에 이르러 53억원의 경상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취지의 보고서를 담당임원에게 보고하였다.

(6) 한편, 삼성전자는 1997. 1.경 이천전기 인수를 위하여 최대 주주인 장세창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여 장세창에게 주식인수 의사를 전달하고 가격협상절차에 들어가 이천전기의 자산가액은 재무상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천전기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실사 후 인수가액을 조정하기로 하여, 삼성전자는 1997. 2. 10. 부터의 실사 결과 비록 당시 이천전기가 자본잠식상태의 기업이지만 한전납품권 등 영업권, 특허권, 기술력 등 무형의 자산이 상당하고,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프리미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1997. 2. 17. 제6차 협상에서 인수가액을 90억원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7) 삼성전자의 이사 59명 중 대표이사이던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이사이던 피고 최도석 등 이사 32명이 1997. 3. 14. 10:00부터 11:00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0 삼성본관건물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천전기 인수를 위하여 사전에 작성된 자료인 별지 5. '중전사업 참여방안'(을제7호증), '전자의 중전사업참여방안', '이천전기 재무구조 개선안'(을제25, 26호증) 등의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경영지원실의 피고 최도석 이사로부터 삼성전자의 장래를 위하여 중전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고, 신규법인의 설립보다는 기존업체인 이천전기의 인수가 유리하며, 유상증자 및 단기악성자금의 장기저리자금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핵심경영인력의 조기 투입, 고급 기술인력 확보, 도시바 등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사업구조 재편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조만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천전기 주식 583,630주를 개인주주인 소외 장세창으로부터 90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

전자는 같은 날 위 주식을 매입하였다.

(8) 한편 위 피고들이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결의할 당시의 이천전기의 재무구조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무상황

① 이천전기에 관한 별지 3. 대차대조표 기재에 의하면, 1995년 831억원이던 단기차입금규모가 1996년 1,075억원에 이르고, 1년 이상 고정부채의 규모는 1995년 274억원 수준에서 1996년 350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부채총규모는 1995년 1,417억원에서 1996년 1,70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자본총계는 1995년 -69억원, 1996년 -433억원이다.

② 이천전기에 관한 별지 4. 손익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매출액규모는 1995년 605억원, 1996년 641억원, 매출원가는 1995년 587억원, 1996년 615억원이고, 매출이익은 1995년 18억원, 1996년 26억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1995년 149억원, 1996년 191억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고, 경상이익은 1995년 -155억원, 1996년 -197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1995년 -155억원, 1996년 -197억원으로 금융비용 이상의 손실을 보이고 있었다.

(나) 위 피고들이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1997. 3. 14. 직전인 1997. 2. 28. 당시의 이천전기의 차입금 합계는 1,394억 3,500만원이었다.

(9) 그 후 이사 59명 중 대표이사이던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이사이던 피고 최도석 등 이사 31명은, 1997. 4. 2. 08:00부터 09:00까지 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대표이사이던 피고 이진희, 김광호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최도석으로부터 이천전기 유상증자에의 참여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천전기의 신주 1,697,982주를 8,489,910,000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였고, 또한 1997. 4. 3. 14:00부터 15:00까지 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대표이사이던 피고 이건희, 김광호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최도석으로부터 이천전기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인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천전기의 실권주 2,302,018주를 11,510,090,000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각 결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1997. 4. 3. 이천전기의 신주 400만주를 200억원에 인수하여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의 주식 85.27%(=4,583,630/5,374,869×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10) 삼성전자는 위와 같이 이천전기를 인수한 다음 이천전기가 부담하고 있던 종금사의 단기 차입금을 평균금리 12.19%의 장기 저리 은행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삼성전자의 경영인력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진행하는 한편, 일본 도시바 등에 기술제휴 요청 및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 파견 요청 등 전략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인력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이 있는 제품 위주의 사업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등 하였으나, 1997년 말 외환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에 외환위기가 도래하여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IMF 관리체제 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천전기는 수요처의 투자 축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환율, 금리의 상승으로 영업외 비용이 증가하여 인수전인 1996년에 비하여 오히려 재무구조가 더 급격히 악화되게 되었다. 더욱이 정부의 주도로 부실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시행되면서 퇴출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삼성전자는 1998. 2. 28.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계열구조계획'을 체결하면서 당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관계회사인 삼성전자의 지급보증 등이 없이는 신규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

던 이천전기를 삼성그룹 계열구조조정업체로 선정하여 계열기업에서 분리하는 등 구조 조정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552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에 의하여 1998. 4. 1.부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이천전기에 대하여 신용으로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주회사인 삼성전자에게 위 신용대출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요구하였다.

(11)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이사회는 1998. 3. 26. 300억원, 1998. 3. 27. 1,170억원, 1998. 3. 30. 100억원 등 합계 1,570억원에 이르는 이천전기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각 결의를 하였다.

(12) 그 후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이천전기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1998. 6. 12. 자금시장 악화, 경기하락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중전기 수요가 낮아질 전망이고, 이천전기의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계열사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생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천전기를 회생불가기업으로 판정하고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동안의 이천전기에 대한 투입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이천전기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천전기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삼성전자가 보증인으로서 이천전기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이르게 되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천전기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8. 7. 28. 197억원, 1998. 8. 11. 641억원, 1998. 8. 25. 400억원, 1998. 9. 5. 471억원 등 합계 1,709억원에 이르는 이천전기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각 결의를 한 후 이를 인수함으로써 출자를 하였다.

(13) 이와 같이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의하여 이천전기가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되

자, 삼성전자는 1998. 9. 24. 14:00경부터 이천전기에 대한 해산결의를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천전기를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이천전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를 거쳐 1998. 12. 28. 일진그룹에 이천전기에 대한 소유주식 전부를 95억원에 매도하였다.

(14) 한편 1995. 5. 소외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따르고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제10조, 17조에 의하면 부도처리된 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는 적색거래처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기한연장, 갱신, 대환, 신용보증 포함) 취급중단, 가계당좌예금·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기존 가계당좌예금·당좌예금 거래의 해지,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금지,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 강구, 연대보증인 자격 불인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삼성전자의 이사인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위에서 본 이천전기주식의 매입결의, 각 출자결의 및 각 지급보증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합계 1,999억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나, 그 후 이천전기가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퇴출대상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이천전기 주식 전부가 일진그룹에게 95억원에 매도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1,904억원(1999억 - 95억)의 손실을 입게 하였고, 피고 이진희는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삼성전자의 이사들인 위 피고들에게 이천전기를 인수하도록 지시한 업무집행자로서, 가사 그와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결의 당시 삼성전자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다른 이사들의 결의가 삼성전자에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사로서의 감시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각자 삼성전자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천전기주식의 매입결의, 각 출자결의 및 각 지급보증결의를 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이 경영자로서 삼성전자를 위하여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이천전기를 인수하고, 이천전기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게 된 것이므로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경영판단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이사의 임무해태 여부의 판단 기준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경영의 주체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399조 제1항).

그러나, 회사의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할 것이다(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을 초

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영자가 의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및 의사결정에서 통상의 기업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재량권의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집행의 목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사적인 이해관계가 게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나 정보의 취득 여부, 그 업무집행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삼성전자의 이사회가 1997. 3. 14.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여 장세창의 주식을 90억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4. 2.과 같은 해 4. 3.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천전기의 신주를 200억원에 추가 인수하였던 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하기 직전 연도인 1996년 말의 이천전기의 자본이 -433억원에 이르러 인수 당시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당기 순이익도 1996년에 -197억원에 이르렀으며, 인수결의 직전인 1997. 2. 28. 당시 이천전기의 차입금이 1,394억 3,500만원에 이르는 등 이천전기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였던 점,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함으로써 이천전기의 지배주주가 됨과 동시에 이천전기의 차입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이천전기를 인수하기 1년전부터 미리 실무자로 하여금 중전사업에의 참여 필요성, 사업성에 관하여 검토하게 하고 이천전기의 재무구조 개선안, 향후 손익전망, 경영방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한 점, 인수가격결정을 위하여 수 차례 협상과정을 거쳤던 점,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실

무자들이 작성한 '삼성전자의 중전사업 참여방안', '이천전기 재무구조 개선안' 등의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피고 최도석으로부터 삼성전자가 중전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고, 신규법인의 설립보다는 기존업체인 이천전기의 인수가 유리하며, 유상증자 및 단기 차입금의 장기저리자금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삼성전자의 경영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조만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이천전기의 인수가 삼성전자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신뢰하여 인수결의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이사들이 이천전기의 인수결정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기업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거나 그 인수결정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경영판단의 재량권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천전기 인수 이후에 발생한 IMF 관리체제라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 변화로 이천전기의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이사들이 위 결정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거나 그 결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이사들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인수결정에 찬성한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 등이 위 인수결정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전제로 한 피고 이견회에 대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이사회가 1998. 3. 26. 이천전기의 금융기관에 대한 300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결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30.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570억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8. 7. 28.부터 같은 해 9. 5.까지 사이에 합계 1,709억원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한 이후 1997년 말 국내에 외환위기가 도래하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IMF 관리체제 하에 들어가게 됨을 계기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1998. 2. 28.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계열구조 조정계획'을 체결하면서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지급보증 등이 없이는 신규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던 이천전기를 계열구조조정 업체로 지정하여 계열기업에서 분리하기로 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8. 4. 1.부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이천전기에 대하여 신용으로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주회사인 삼성전자에게 위 신용대출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요구하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1998. 3. 26. 300억원, 1998. 3. 27. 1,170억원, 1998. 3. 30. 100억원 등 이천전기의 금융기관에 대한 합계 1,57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각 결의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1998. 6. 12. 이천전기를 회생불가기업으로 판정하고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동안 투입하였던 자금 등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이천전기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급보증인으로서 이천전기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이르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천전기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8. 7. 28. 197억원, 1998. 8. 11. 641억원, 1998. 8. 25. 400억원, 1998. 9. 5. 471억원 등 합계

1,709억원에 이르는 이천전기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각 결의를 한 후 인수함으로써 출자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당시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 중 부도처리된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는 그 부도처리된 회사와 함께 관련인으로서 적색거래처로 분류되어 신규여신 취급 중단,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당좌예금 거래의 해지,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 강구 등과 같은 금융제재를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삼성전자 이사회의 위와 같은 각 지급보증결의와 그에 따른 각 출자결의는 이천전기의 부도로 인하여 삼성전자까지 거래은행으로부터 적색거래처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삼성전자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이천전기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충실화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였던 소위 I.M.F 사태로 인하여 부득이 이천전기가 퇴출기업으로 지정된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위 지급보증결의와 추가출자결의는 삼성전자의 이사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결의가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이천전기가 부도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천전기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의 지배주주 자격을 상실시킴으로써 관련인의 자격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천전기로 하여금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또는 화의개시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아 채무재조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각 지급보증 및 출자를 하는 결의를 한 것은

삼성전자의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이천전기의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여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내지 화의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줄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이천전기가 부도처리될 경우 삼성전자의 신용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결정은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판단 범위 내에 속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원고들은, 1997년말을 기준으로 이천전기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1,331억원이고, 그 중 이미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이 지급보증한 부분이 693억원이므로 나머지 638억원(1,331억 - 693억)만이 추가로 지급보증을 할 필요가 있는 부채임에도 삼성전자가 이천전기에 대하여 1998. 3. 26.부터 1998. 3. 31.까지 사이에 1,570억원을 지급보증하여 932억원(1,570억 - 638억)에 관하여 불필요한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그 지급보증결의를 한 이사들은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강제12호증의 1 내지 4, 강제26호증의 9, 강제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천전기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1998. 2. 28.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계열구조계획'을 체결하면서 당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관계회사인 삼성전자의 지급보증 등이 없이는 신규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던 이천전기를 삼성그룹 계열구조조정업체로 선정하여 계열기업에서 분리하는 등 구조조정작업을 하기로 하는 한편,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8. 4. 1.부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이천전기에 대하여 신용으로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이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주회사인 삼성전자에게 기존 신용대출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삼성전자가 1998. 3. 26.부터 1998. 3. 31.까지 3회에 걸쳐 1,570억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위하여 불필요한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한편 원고들은 삼성전자가 위와 같은 불필요한 지급보증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존 지급보증부분인 155억원의 채무를 떠맡은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3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의 155억원 상당의 지급보증부분은, 삼성전자가 1,570억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기 전인 1997. 7. 11. 이천전기가 삼성생명에 대한 채무 50억원(지급보증액 65억원)과 회사채 65억원(지급보증액 9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해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또한 원고들은, 이천전기의 1996년 말 결손금 432억원 중 1997년 신규출자로 감액된 2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32억원에 대하여 삼성전자가 이천전기 청산의 경우 삼성전자가 적색거래처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신 변제하여야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함에 있어 이천전기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난 후 재무구조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까지 세우고 난 다음 이천전기를 인수하게 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천전기가 부도가 나거나 청산될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예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천전기의 채무보증결의 및 이에 따른 출자로 인한 삼성

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 및 매도행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6의 가.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삼성전자의 이사들인 피고 이진희, 김광호, 이윤우, 이해민, 윤종용,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 등은 비상장법인인 삼성종합화학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000만주를 1994. 4. 25.경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인 1994. 12. 17. 삼성종합화학주식 2,000만주를 1주당 2,600원에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인수시점과 위 매도시점 사이에 삼성종합화학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1주당 취득가액과 매도가액 사이에 7,400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당초 부당하게 고가로 취득하였거나 나중에 부당하게 저가로 매도하였거나 한 탓이라 할 것이고 이로써 결국 부당하게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 이익을 주고 삼성전자에게 1,480억원(=7,400원×2,000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인 바, 이는 위 피고들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각자 위 1,480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액면가대로 인수하게 된 것은 당시 삼성전자가 삼성종합화학의 최대주주인 관계로 삼성종합화학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한편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인수한 이

후 8개월만에 1주당 2,600원에 매도하게 된 것은,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됨)으로 타법인 출자한도액이 자기자본의 40%에서 25%로 축소되는 관계로 신규기업투자의 여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삼성전자가 1995년도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호황을 이어가던 반도체 사업에 기업의 총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신규 투자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삼성종합화학이 1994. 4. 실시한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1994년 말경의 누적적자가 2,171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발생하고 향후 수익 창출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위 주식 2,000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다음, 매수처를 물색하다가 결국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항공과 삼성건설에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쌍방 실무당사자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가 그룹계열사간의 거래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통한 평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격으로 하기로 한 다음 삼성종합화학의 외부감사인인던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매각하게 된 것이고, 이사회 결의 당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위 주식을 1주당 2,60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인바, 위 결의 당시 위 피고들은 삼성전자의 경영자로서 삼성전자를 위하여 최선이라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랐을 뿐, 삼성전자의 이사로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먼저 삼성전자가 1994. 4. 22. 삼성종합화학의 신주를 주당 10,000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삼성전자가 1994. 12. 17.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매도할 당시의 적정가액을 주당

5,733원으로 보아야 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1994. 4. 22. 신주를 인수할 당시와 1994. 12. 17. 위 주식을 매도할 당시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의 가치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삼성전자가 위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적정가액은 주당 5,733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 그 주식을 10,000원에 인수하였으면 적정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이 되어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할인발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경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만이 가능한 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그 평가방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적정가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고, 주식의 취득에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적정가액 외에 다른 요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평가될 수 있는 점, 삼성전자는 1988. 7. 23.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처음으로 취득할 당시부터 그 이후 10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는 물론이고 이 사건 1994. 4. 22.의 신주인수 당시에도 모두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온 점, 당시까지 삼성종합화학은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충실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인데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삼성종합화학의 자금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부도처리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로서도 금융제재를 받게될 수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삼성전자가 삼성종합화학의 신주를 주당 10,000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한 것이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1994. 12. 16. 주식 매도 결의에 있어서의 임무해태의 여부

(가)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

할 의무를 지므로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매도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에 따라 매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기업인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서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대로, 만일 그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 당시의 가액, 매도 당시의 당해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를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매도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시가 또는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게 양도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우선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주당 2,600원에 매도한 것이 시가 또는 적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삼성전자가 위 주식을 매도할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실거래 사례는 엿보이지 아니한다(한솔제지 주식회사가 1993. 6.경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관 주식회사에게 주당 6,600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① 삼성전자가 1988. 7. 23. 삼성종합화학의 주식 150,000주를 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삼성종합화학의 유상증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1992. 2. 12. 3,262,948주를 취득할 때까지 11차례에 걸쳐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각 취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4. 22.에도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1,000만주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21,755,567주를 거의 6년에 걸쳐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온 점, ②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3년에는 5,064원이었음에 대하여 1994년에는 5,733원으로 669원 증가되었고, 별지 8. '삼성종합화학의 중요재무정보의 변동추이(1991년~1995년)' 기재와 같이 삼성종합화학의 매출액은 1993년 3,919억원에서 1994년 5,099억원으로 1,180억원 증가되었으며, 순이익은 1993년 -943억원에서 1994년 -185억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순손실액의 규모가 758억원 개선된 것을 고려하면, 위 주식의 최종 취득시점인 1994. 4.경에 비하여 1994. 12.경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가치가 1/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③ 한솔제지 주식회사가 1993. 6.경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관 주식회사에게 455,000주, 삼성전기 주식회사에게 578,000주,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455,000주, 주식회사 제일기획에게 150,000주를 각 매각하였고, 그 중 삼성전관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당 6,600원에 거래한 점(당시 한솔제지와 삼성전관은 삼성종합주식의 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및 상속재산평가준칙에 따라 자산을 평가한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주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당시에 삼성종합화학이 사업개시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법인인 관계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하고 지배주주 프리미엄 10%를 감안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였다), ④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의 결정은 삼성전자의 담당 실무자가 외부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2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의뢰하였고, 위 회계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에 근거하여 1주당 2,600

원으로 평가함으로써 그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상속세법에 따른 목적물가액의 평가는 조세처분권자의 입장에서 조세부과를 위한 목적의 특성상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는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적어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시가 또는 적정가액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등 시가 산정기준에 관한 목적 당사자의 관점이 서로 상이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는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버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예컨대 어떤 비상장기업이 사업개시를 한 후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 위 상속세법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위 기업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사업개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액이 그 주식의 가치로 인정되는 반면,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그 주식의 가치가 순자산가치액의 절반으로 평가되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심지어 3년을 경계로 수 일 사이에 주식의 가치가 달리 평가되어진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삼성종합화학은 사업개시 초기에 대규모의 고정자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른바 장치산업업체이고, 이러한 장치산업업체는 사업초기 수년간은 적자가 불가피하고 향후 매출이익이 점차 증대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점차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종합화학도 당기순이익이 1991년 -7억 900만원, 1992년 -969억 1,700만원, 1993년 -943억 8,600만원으로 적자의 폭이 커지다가, 1994년경에 이르러 -185억 7,000만원으로 적자의 폭이 감소되는 것으로 반전되고 있는 반면, 매출총이익은

1991년 120억 2,400만원, 1992년 129억 4,200만원, 1993년 210억 1,900만원, 1994년 1,407억 2,600만원으로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수익에 기초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법인이 일정한 사업계획에 오른후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이 심한 기복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삼성종합화학과 같이 사업개시 이후 3년 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장치산업의 고유한 특성인 재무구조 상황을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매매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응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 주당 2,600원은 그 시가 또는 적정가액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다만 위 매각가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액보다 훨씬 저가로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고들은, 삼성전자가 1995년도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호황을 이어가던 반도체 사업에 기업의 총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신규 투자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삼성종합화학이 1994. 4. 실시한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1994년 말경의 누적적자가 2,171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발생하고 향후 수익 창출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처분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할 불가피한 사정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② 다음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타법인 출자한도액이 자기

자본의 40%에서 25%로 축소되는 관계로 신규기업투자의 여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법률 부칙 제2항은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3년 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는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3년간 25% 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었으므로 반드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여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라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위 법률이 시행되었을 경우 타법인 출자한도의 기준이 될 1994년 말경 삼성전자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25%를 넘기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③ 피고들은, 관계법령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속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후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어 세법상 큰 불이익을 입게되는 것은 물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내부자거래'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상속세법에 정하여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처분이 있었던 1994. 12. 16.경 시행되고 있던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로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위 규정에서의 시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바, 이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미달되는 금액에 처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높은 가액에 처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으며, 다만 취득자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고가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겠으나, 영리법인인 삼성전자가 그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전혀 별개의 법인인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령의 규정이 거래 당사자에게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에 따른 거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저가 또는 고가에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고 그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정한 주식가치의 평가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후 부당행위계산의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거래당사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유 역시 모두 이유 없어 취득가액의 1/4이라도 처분하였어야 할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주

식의 매도를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여 찬성한 이사들은 매도 대상인 주식의 적정가액에 관한 검토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위 매도 당시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적정가액(=순자산가액)

①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입었을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매도 당시 위 주식의 적정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그 평가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에도 분석의 고려 요소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식평가방법과 기업가치분석 방법 등을 고려하고 그 각 방법들이 실정법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실태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첫째, 기업회계기준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둘째, 기업의 가치평가방법인 자산가치평가방법, 수익가치평가방법, 상대가치평가방법 중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총자산-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 자산가치평가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셋째, 이 사건 주식 매도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제(1)호에는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업중인 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순자산가치가 동일한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도시점인 1994. 12. 17.은 삼성종합화학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여지는 1991. 9.경으로부터 불과 3년 남짓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삼성종합화학의 기업 특성상 초기에 상당한 정도의 투자비용 등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삼성종합화학의 실질적인 사업 개시 시점으로부터 최초 3년간에 해당하는 위 주식 매도 시점까지의 삼성종합화학의 순손익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경의 배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그 주식의 실질가치는 적어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주당 순자산가치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그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이 반영된 결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보다 하회하는 결과도 발생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적어도 처분시의 적정가액은 그 당시의 삼성종합화학의 순자산가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삼성전관 주식회사의 1994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1994. 12. 31. 현재 삼성 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5,733원이고, 1994. 12. 1.을 기준으로 안전회계법인이 산출한 삼성종합화학의 순자산가액 217,273,988,737원은 자산 중 건물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 20,500,997,594원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이를 장부가액인 67,526,699,208원으로 수정하여 산정하면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5,745원이 되어 위 결과와 유사하므로, 위 때도 시점 무렵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적정가액을 위 5,733원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ㄱ) 건물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수정할 경우 증가되는 순자산가액
 $47,025,701,614\text{원}(=67,526,699,208\text{원} - 20,500,997,594\text{원})$

ㄴ) 순자산가액 합계

$264,299,690,351\text{원}(=217,273,988,737\text{원} + 47,025,701,614\text{원})$

ㄷ) 1주당 순자산가액

$5,745\text{원}(=264,299,690,351\text{원} \div \text{총발행주식 } 46,000,000\text{주, 원미만은 버림})$

피고들은,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2에서는 건물의 평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순자산가액의 산정시 건물의 평가방법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에 따른 목적물가액의 평가는 조세처분권자의 입장에서 조세부과를 위한 목적의 특성상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는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적어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시가 또는 적정가액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등 그 당사자의 관점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건물

을 평가할 경우 위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는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영리법인인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삼성종합화학이 사업을 개시하여 건물을 준공한지 3년 남짓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그간의 감가상각액을 고려한 장부가액이 존재한다면 이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입은 손해액은 626억 6,000만원($=3,133\text{원} (=5,733\text{원} - 2,600\text{원}) \times 20,000,000\text{주}$)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3) 책임을 부담할 피고들의 범위

위 주식 매도를 결의한 이사회에는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 이 참석하여 그 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은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피고 이건희, 이윤우, 윤종용이 위 주식의 처분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무해태를 이유로 부당한 위 이사회 결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부당한 주식의 매도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부당한 결의를 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 이건희, 이윤우, 윤종용에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책임해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주식의 매도행위에 관하여는 삼성전자의 199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의 승인이 있는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해당 이사들의 책임이 모두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26호증의 3, 4, 을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의 1995. 2. 25.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된 1994년도 재무제표상에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처분 사실 뿐만 아니라 처분으로 인한 손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1994년도 사업보고서에도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처분사실 뿐만 아니라 처분가액 및 처분으로 인한 손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다든지, 회사에 대한 신뢰관계를 깨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임무해태행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 당시의 가액, 매도 당시의 적정가액의 산정, 매도 당시 삼성전자에 위 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저가로 양도하여야만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삼성종합화학의 건물의 평가를 장부가액이 아니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 특히 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매입한 주식의 가치가 불과 8개월이 지난 후에 무려 4분의 1에 가까운 2,600원으로 평가되었다면 마땅히 그 폭락의 원인, 최근의 매각사례, 주식의 적정한 가액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안전회계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만을 기초로 주식양도가격을 정하여 주식매각 결의를 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위 이사회에 참석한 해당 피고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배

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이러한 임무해태행위에 이르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주식의 처분결의에 따른 처분행위는 상법 제 450조 단서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들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가사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인 피고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이 절감된 만큼 삼성전자가 이익을 본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삼성전자가 위 피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상당의 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지 이를 위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소송은 이사가 임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자의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회사를 대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주주대표소송인데, 이사와 회사와는 위임관계에 있고, 위임인인 회사가 수임인인 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회사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의 시행경위, 이사의 업무내용과 회사의 배려 정도, 이사의 임무위반의 태양,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기타 제 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삼성전자

가 1995년도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호황을 이어가던 반도체 사업에 2조 3,496억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타법인 출자한도액이 자기자본의 40%에서 25%로 축소되는 관계로 신규기업투자의 여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1995년에 삼성중공업 등 관계회사 주식 취득에 3,246억원, 해외법인 출자금에 3,280억원, 기타의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출자금에 2,390억원을 출자하는 등 이 사건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처분 당시 삼성전자가 보유중이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였던 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매수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삼성 계열회사가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자 매매가격 협상과정에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매매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주식가액의 산정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한 다음, 그 자료를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 사정, 위 회계법인이 제공한 자료에 따른 위 주식의 평가액이 당시의 적정가액이라 보여지는 주당 순자산가치에 미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인 점, 이 사건 주식의 매각과정에 있어 피고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점, 삼성전자가 위 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처분손실을 입었지만 그 이후 반도체 부문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던 점, 당시 이사회 구성원들인 피고들은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그 이후 삼성전자의 이윤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상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주식처분의 결의에 찬성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총손해액의 약 20% 가량인 120억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삼성전자에게 위 12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삼성전자에게, 피고 이진희는 70억원,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12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1.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권 _____

 판사 이인형 _____

 판사 이성구 _____

3. 대차대조표(단위 : 억원)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유동자산	817	684	560	478
현금예금	82	34	77	68
매출채권	245	233	189	221
채고자산	431	361	245	98
기타	59	56	49	91
고정자산	531	588	578	581
투자자산	49	59	36	61
유형자산	461	513	527	501
무형자산 및 이연자산	21	16	15	19
자산총계	1,348	1,272	1,138	1,059
유동부채	1,143	1,355	1,630	1,989
매입채무	210	192	137	204
단기차입금	831	1,075	1,390	1,725
기타	102	88	103	60
고정부채	274	350	133	90
장기차입금	224	289	42	28
부채성충당금	50	61	88	62
기타	-	-	3	-
부채총계	1,417	1,705	1,763	2,079
자본금	69	69	269	269
자본잉여금	60	-	-	-
이익잉여금	-198	-502	-894	-1,284
(당기순이익)	-155	-197	-388	-390
자본조정	-	-	-	-5
자본총계	-69	-433	-625	-1,020
부채와 자본총계	1,348	1,272	1,138	1,059

4. 손익계산서(단위 : 억원)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매출액	605	641	592	620
매출원가	587	615	610	596
재료비	364	381	378	370
노무비	106	111	110	107
경비	117	123	122	119
(감가상각비)	19	26	27	31
매출총이익	18	26	-18	24
(매출총이익율)	3%	4%	-3%	4%
판매비와 관리비	36	43	76	37
(감가상각비)	1	0	1	1
(인건비)	15	22	33	16
영업이익	-18	-17	-94	-13
(영업이익율)	-3%	-3%	-16%	-2%
영업외수익	12	11	13	4
영업외비용	149	191	307	381
(금융비용)	134	171	179	261
경상이익	-155	-197	-388	-390
(경상이익율)	-26%	-31%	-66%	-63%
당기순이익(순손실)	-155	-197	-388	-390

5. 중전사업 참여방안

1997. 1.

전자사업의 시스템화, 중전사업의 전자화를 융합한
미래지향적 사업구조 구축을 위한 중전사업 신규
참여 및 그에 따른 그룹내 관련사업 조정, 이천전기
지분흡수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戰略企劃室

1. 중전사업 참여 타당성

☐ 선진형 사업구조 재편

-사업구조 전환 : 전자(부품+set) 중심 → 종합전자(부품+set+시스템+SI)

-경기불황에 관계없는 안정적 사업기반 : 선진평균 20%이상 사업비중

1995년	SIEMENS	G E	東芝	日立	三菱電氣	L G	당 사
총 매출 (兆원)	47.4	53.9	39.3	62.2	26.6	12.2	16.2
중전비중 (산전포함)	35.1%	23.9%	22.3%	31.8%	41.2%	21.0%	1.7%

☐ 전자화/시스템화 추세로 전자의 기술력 집중시 차별적 성공가능성 배가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차별화와 SI솔루션 제공능력이 사업성공의
Key Factor

→ 중전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도 증가(S/W, 통신, Network 등)

→ 東芝 府中공장의 경우 전체 인력(7,500명)의 60%가 S/W 엔지니어

과거 : 중전기

현재 : 중전자

미래

단품



Chip화/시스템화



Network화

기계 + 전지

중전기 + 전자(제어) + 정보통신

SW 중심

(SI 사업화)

인공지능화

☐ 국가 기간산업으로 대형시장에서의 사업기회 창출

-세계시장 규모 막대 : 1995년 1,800億\$ → 2000년 2,200億\$ (발전제외)

-국내 전력부족으로 설비증강 지속 : 향후 10년간 60兆원 투자

-통일대비 : 북한지역 송배전 인프라부문 우선투자 예상 (한전계획)

-중국 및 동남아 인접국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그룹내 수요 대응 : 년 1,200億원 규모(향후 더욱 확대 예상)

☐ 중전시장 진입의 마지막 기회

-98년 시장개방을 앞둔 업계 재편 : 중소기업 위주 → 대기업 위주

-東芝 기술습득의 마지막 기회 : 東芝 佐藤회장과의 우호적 관계 활용

2. 사업 현황 및 현안

☐ 그룹내 중전/산전 관련사업현황

	전자	항공	SDS	이천*
사업내용	정보통신(本)* - 산전시스템 전력/환경, 교통,영상, IC카드	항공정공(本) - 정밀기계(事)* 제어기기(PLC 인버터) 산전(수배전제어 DCS, GIS) - 자동화시스템(事) 물류시스템(자동 창고) FA시스템 (공장자동화)	SI(本) SCADA CIM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펌프
규모('96) - 매출 - 손익 - 인력	1,918억원 - 130억 778명	2,120억원 - 203억원 990명	500억원 - 300명	650억원 - 178억원 733명

※ 1차 통합대상(1996 사업규모 : 매출 3,212억원, 인력 1,693명)

☐ 이천전기 현안

-장회장 지분정리(협상중) : 인수가격 차이로 인해 담보 상태

(당사 68억 제시, 장희장 120억요구) → 최고경영자 주관하의 협상 필요

-증자 주체 결정 : 전관(현 출자사) 또는 당사 직접 참여

· 現 전관지분(38%)의 당사 인수여부 포함

3. 사업조정방향

☐ 기본 방향

- 당사 산전사업을 근간으로 그룹내 중전/산전 관련 사업의 종합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소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인수 가능 사업부터 단계별로 통합하며

· 1단계 : 제어기기(PLC, 인버터), 중전기(수배전반, DCS, GIS)

* 수배전반, DCS는 기계소그룹과의 조정필요

· 2단계 : SDS의 SCADA/CIM

-同 조직은 사장 직속의 독립사업단위로 구성. 운영함

☐ 세부내용

○ 사업 이관

【기계소그룹 → 전자】

-대상 품목 : 제어기기(PLC, 인버터), 중전기(수배전반, DCS, GIS)

· 제어기기 사업 및 GIS사업은 기계소그룹의 이관의사에 따라 당사가 인수함

제어기기: 매출채권 및 이연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전체

(약 100억)와 생산인력을 제외한 영업 및 개발인력(47명)

GIS : 관련 설비, 인력 20명 등 사업전체

· 수배전반 및 DCS사업은 중공업에서 자체수요 충당의 이유를 들어 이관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사업중복에 따른 자원분산, 기술적 시너지 약화등 많은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당사로 일원화할 필요가 큼(중공업 필요 제품의 우선공급 추진)

【SDS → 전자】

-대상사업 : SCADA, CIM

· 금번 통합대상에서 제외

(단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시 통합 추진)

○ 이천전기 현안 해결

-장희장 지분 정리 : 당사 제시한 수준(68억) 정도에서 Nego 필요

-경영진 선임 : 이천전기 성 사장 교체 및 후속임원 선임

(그룹내 임원 및 업계 전문인력)

-증자 : 1996. 4. 25. 비서실 증자방침에 의거 증자를 추진하였으나 장희장과의 협상지연등으로 보류 상태임

· 비서실 방침 : 증자주체로는 전관 또는 전자가 중전사업을 전개한다면 전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

□ 인수 방안(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 수립 예정)

○ 기계소그룹

-사업분야 : 당사(안)대로 정밀기계 전문분야

→ 중공업 소요 시스템의 우선공급 보장

-사업장은 공장인수없이 기존사업장 활용

· 제어기기 : 항공 1공장(창원) → 수원공장(기존 산전과 통합)

· 중전기기 : 중공업 1공장(창원) → 수원공장(“)

-인력 인수

- 전분야(개발, 생산, 영업등) 해당인력의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 당사와 중복되는 제어기기 생산인력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함
- 노조관련 인력은 항공과 협의하에 해결토록 함

-인수가액 산정

- 자산가액은 “재무상 장부가” 기준으로 하되,
- 인수가액은 실사후 최종 산정
(적자사업 인수에 따른 주주 반발 고려)

○ 이천전기

- 사업분야 : 전분야
- 사업장 : 현행대로 기존 공장 활용
- 인력인수 : 전분야(개발, 생산, 영업등) 해당인력 이관
- 전관 지분의 당사 인수 추진 : 인수가액 별도 협의

□ 향후 일정

소그룹장 득결후 실 조정을 거쳐 확정 예정임

(별첨) 사업추진팀 구성 및 운영방안

-이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

□기계소그룹 인수 사업분야(案)

-대상분야 : PLC/인버터, 수배전반, DCS, GIS

- PLC/인버터 : 자산 100억(매출채권 및 이연자산 제외) 및 인력 47명

(생산인력 제외)

· DCS, 수배전반 : 중공업에서 자체수요 충당목적으로 이관

거부의사 표명중이나 인수할 필요가 큼

· GIS : 전분야

☐ 이천전기 인수

-증자주체의 결정 : 전관 또는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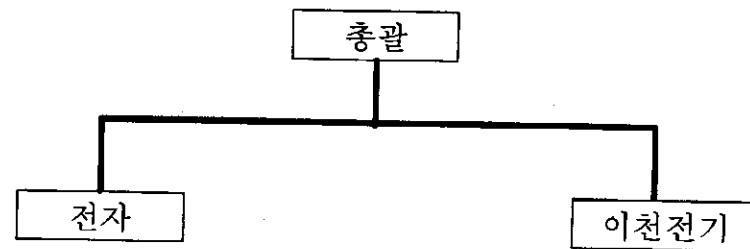
-전관지분의 당사 인수여부 결정

☐ 사업책임자 선임

-사업책임자 : 총괄, 전자

-이천전기 사장

-인수팀장



PLC / 인버터

현행과 同一

수배전반/GIS/DCS

SI(現 산전)

별첨 : 사업추진팀 구성 및 운영방안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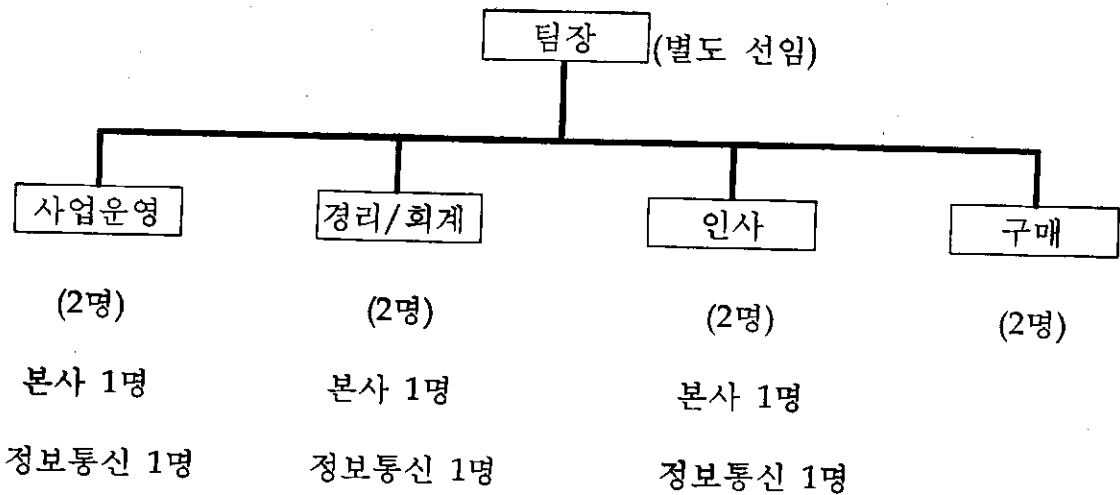
-기계소그룹 이관사업 인수팀 先가동(이천전기는 협상후 별도추진)

-인수와 병행하여 중전사업 추진방안 수립 추진

☐ 팀 구성

-팀장은 인수후 운영을 고려하여 정전 유관인력으로 선임

-기능별로 3개파트 운영



☐ 팀 운영

-팀 활동기간 : 1997. 1. 20.(월) ~ 1997. 2.말

-활동 장소 : 추후 결정(물색중)

☐ 협의회 운영

인수팀과 별개로 관련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운영하여 주요 의사결정 사항이나 현안을 협의함(전략기획실장주재 - 관련임원 참여)

☐ 향후 일정 계획

○ 내부 방침 확정(관련부서 협의등) : 1997. 1. 20.

○ 인수팀 가동 : 1997. 1. 20. ~

- 항공과 인수방안 협의. 결정 : 1997. 2. 5.
- 인수사업 실사 : 1997. 2. 10.
- 항공과 협상완료 : 1997. 2. 20.
- 인수사업 운영방안 수립. 보고 : 1997. 2. 28.(金)

* 이천전기 장희장과의 협상은 별도 진행

6. 기업부실판정위원회 부의서(요약)

평점표1

총배점	재무	70점	28.1	업체명 : 이천전기 결산년월 : 1997. 12.
	비재무	30점	24.2	
	합계	100점	52	

※ 최종 산출평점에서 소수점이하는 절사함

구분		배점	평점표			비율	등급	평점
			A	B	C			
안정성	당좌비율	5	5	3	1	19.32	B	3
	자기자본비율	10	10	7	4	-54.93	C	4
	차입금의존도	5	5	3	1	126.13	C	1
	차입구조	2	2	1.3	0.6	80.19	B	1.3
수익성	총자본경상이익율	7	7	5	3	-32.20	C	3
	매출액총이익율	2	2	1.3	0.6	-2.99	C	0.6
	금융비용부담율	4	4	2.5	1	30.28	C	1
	이자보상배율	2	2	1.3	0.6	-1.16	C	0.6
성장성	총자본증가율	2	2	1.3	0.6	-10.54	C	0.6
	자기자본증가율	4	4	2.5	1	-44.45	C	1
	매출액증가율	2	2	1.3	0.6	-7.60	C	0.6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2	2	1.3	0.6	0.49	B	1.3
	재고자산회전율	2	2	1.3	0.6	1.95	C	0.6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4	4	2.5	1	20.36	B	2.5
C/F	CF/총부채	10	10	7	4	-12.07	C	4
	CF매출액	7	7	5	3	-0.36	C	3
총배점		70				평점		28.1

※ 당행에서 사용중인 기업체종합평가표상 16개 주요 재무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평점표2

총배점	재무	70점	24.0	업체명 : 이천전기 결산년월 : 1997. 12.
	비재무	30점	24.2	
	합계	100점	48	

※ 최종 산출평점에서 소수점이하는 절사함

구분		배점	평점표			비율	등급	평점
			A	B	C			
수익성	매출액총이익율	10	10	6.5	3	△2.99	C	3
	자기자본영업이익율	8	8	5	2	17.79	B	5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2	12	8	4	△118.69	C	4
	부채상환계수	10	10	6.5	3	△15.78	C	3
	유동비율	12	12	8	4	34.33	C	4
안정성장성	부채비율	10	10	6.5	3	자본잠식	C	3
	매출이익증가율	8	8	5	2	△7.60	C	2
총배점		70				평점		24

※ Price Waterhouse에서 가능한 대안제시비율 7개 항목과 각 항목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작성

심사의견

- 이천전기는 1939년 일본 도시바공장으로 출발, 1956년 이천전기공업(주)로 설립등기된 국내 최초의 중전기 제조업체로서 일본 도시바(주)와 기술제휴 및 합작을 통해 전동기등 산업용 전기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삼성제열 당행 주거래 비상장 대기업체로

1997년 5월 삼성계열에 편입됨

- 이천전기는 1980년 중전기 투자조정 이후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또한 시설투자 및 부족한전자금을 전액 외부차입금에 의존함으로 금융비용이 30% 상회하고 생산설비 노후화 및 기술인력 부족, 자동화율 저조 등으로 중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였고 중저가 제품시장이 군소업체들간의 저가수주경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1992년 이후 연속 적자로 인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중점관리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음

①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 잠식업체, ② 전년도말 금융기관 차입금이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는 업체, ③ 최근 3년간 계속 적자업체

- 1998. 6. 11. 당행 여신 30억원 전액 상환으로 중점관리기업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중점관리기업 해제업체에 해당되나,

-1998. 2. 28. 삼성계열과 자행간에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계열구조 조정계획'에 1998년중 계열구조 조정 대상업체로 정리계획이 있음

-1998년 동업종 산업동향은 우리나라를 비롯 동남아시아시장의 경기회복조짐이 불투명하고 자금시장 및 경기하락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중전기 수요도 전년 수준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천전기 역시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또한 계열사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생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업부실 판정기준 제3호에 의한 회생불가기업'에 해당됨으로 회생불가기업으로 분류코자 부의합니다.

7. 회의록

의장인 대표이사 피고 문병대가 제2호 안건 “이천전기(주) 해산 결의의 건”을 상정하고
경리팀 최외홍 담당임원의 제안설명후 위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힐링거(Hirlinger) 이사가 이천전기 해산 결정이 아주 적절한 조치이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천전기 해산이 정부의 강력한 권고 때문인지 회사의
자체 경영판단에 의거한 것인지 묻자,

피고 최도석 이사가 이천전기가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거의 불
가능하고 관계사 상호지급보증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정지태 이사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에 의거 증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천전기가 필
요하고 지금까지 유상증자를 해서 2,0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천전기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주도 상당량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해서 해산
을 결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피고 최도석 이사는 이천전기가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
금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고 IMF로 인해 침체된 증전사업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1~2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답하다.

윤병철 이사는 이천전기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증을 대불하기 위해서 청산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다. 즉, 이천전기의 부도 또는 채무
미변제시 삼성전자 및 그룹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증자에 의한 채무변제를
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임성락 감사는 이천전기 지분 중 삼성전관도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지급보증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자,

피고 최도석 이사는 당사가 이천전기를 통해 중전사업을 하려 했기 때문에 이천전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모두 당사가 했다고 말한다. 만약 지분대로 지급보증을 했으면 전관도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했으나 삼성전관은 중전사업과는 사업연관성이 없어 지급보증이 없다고 말한다.

심의결과, 출석이사 전원은 이의 없이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하다.

□ 이천전기 인수배경 및 정상화 추진

○ 중전사업 참여 당위성 및 이천전기 인수배경

중장기 사업구조 전략방향에 의거 중전사업을 미래의 "씨앗사업"으로 육성
전문인력 부족, 시장개척, 기술도입 및 제품개발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기존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하여 이천전기를 인수함
이천전기를 인수한 이유는 중전사업 물량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전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LG, 현대, 효성, 이천) 및 확실한 기술 partner를 확보할 수 있는 업체(이천 ↔ 도시바)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무 및 경영상태는 부실했으나, 진단결과 회생가능성과 향후 당사의 기반사업으로 육성하여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음(1997. 3.)

※ 1996.말 재무현황

자 산	1,272억원	매 출	641억원
부 채	1,705억원	손 익	△197억원
(차입금)	(1,190억원)		

자 본 △433억원

(자본금) (69억원)

(이익잉여금) (△502억원)

○ 인수가액 : 90억원(지분 42.45%, 삼성전관, 도시바, 기타)

○ 인수이후

1997. 4. 유희동 부사장의 핵심인력 전배

1997. 4. 자본금 200억원 증자 실시 (69억원 → 269억원)

관계사 수주 확대(반도체, 엔지니어링, 전관, 석유화학등)

설비보완 및 품질개선 투자(1997. 62억원)

또한, 구조개선을 위해 부실자산 정리(392억원), 인력조정, 우수인력 유치등 정상화 추진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1997.말 IMF사태로 SOC사업연기, 민간투자설비의 급감 등으로 거래선 신뢰회복, 원가경쟁력 확보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정상화가 지연되어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됨

또한, 1998. 4. 1.이후 관계사 지급보증 전면금지에 따라 사실상 자금조달 대책이 전무한 상태였음

○ 퇴출기업선정(1998년 6월 18일)에 따른 매각추진

회사는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천전기의 고용유지 등을 위해 국내외 중전업체에 매각, 지분참여 협상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음

해외업체 : ELCO, ABB, GEO-Alsthom, Siemens, Schneider, 도시바 등

국내업체 : LG산전, 현대중공업 등

□ 청산을 위한 사전 추진

○ 차입금 상환을 위한 증자 추진(1998. 6.말 차입금 1,688억원)

- 정상적인 법 절차는 이천전기 부도에 따른 대위변제(채무보증 1,999억원)에 의해 청산절차를 추진해야 하나, 부도 또는 채무 미변제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증자에 의한 채무변제 방법을 결정, 추진
- 증자현황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인 수	1997. 3.	90억원	정리 1차증자	1998. 7. 27.	197억원
증 자	1997. 4.	200억원	2차증자	1998. 8. 11.	641억원
			3차증자	1998. 8. 25.	400억원
			4차증자	1998. 9. 4.	471억원
소 계		290억원	소 계		1,709억원
합 계					1,999억원

(채무보증 1,999억원, 계약이행보증 160억원 : 계 2,159억원)

□ 이천전기 해산결의

○ 이천전기 해산 주주총회 소집 (9/17일 이천전기 이사회)

일 시 : 1998년 9월 30일(水) 10:00 ~

안 건 : 제1호의 안 : 해산결의의 건

제2호의 안 : 청산인 선임의 건

○ 이천전기 해산 주총 관련 당사 결정사항

해산주총승인 : 1998. 9. 30. 해산

청산인 선임 : 전자 및 외부 중에서 적의 선정

□ 향후 청산절차

해산주주총회, 해산등기 : 1998. 9. 30., 채권최고 신문공고 : 1998. 10. 1.

재무제표 승인주주총회 : 1998. 11. 23., 잔여재산 확정 : 1998. 12. 5.

청산보고 주주총회 : 1998. 12. 28., 잔여재산 분배 : 1998. 12. 29.

8. 삼성종합화학의 중요재무정보의 변동추이(1991년 ~ 1995년)

단위 : 백만원

	1991년도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
자산	1,446,085	1,473,499	1,465,909	1,492,798	1,624,538
부채	1,172,477	1,196,818	1,283,614	1,229,073	1,283,678
자본	273,608	276,681	182,295	263,724	340,859
매출액	110,865	395,212	391,909	509,941	678,187
당기순이익	-7,090	-96,917	-94,386	-18,570	77,134

정 본 입 니 다 .

2003. 11. 27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인

상 소 관 대 문

판결에 관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1.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 또는 서울고등법원(가동2층 종합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